

[별표1]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고시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1. (고위험기구) 멸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준위험기구)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비위험기구)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지질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낮은 수준 소독을 적용한다. 혈압측정기, 청진기,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식 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병실 집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 ^{1,2}	1분 이상 ³	1분 이상 ³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플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효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점검표(자체점검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점검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담당부서 (부서명기입)	작성자 (기입)
	의료기관 종별 :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급 <input type="checkbox"/> 의원급		
	병상유무 : <input type="checkbox"/> 병상 있음(병상수:) <input type="checkbox"/> 병상 없음		
	처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 처리 <input type="checkbox"/> 전량 위탁 <input type="checkbox"/> 부분 위탁		
세탁물처리업자	위탁처리업체명: ()		
	업체명: ()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세탁물의 보관 기준 - 수집>				
1.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이나 노란색)나 "오염 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				
4. 세탁물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				
<세탁물의 보관 기준 -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 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함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				
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함				
<세탁물의 운반 기준>				
1.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				
2.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3.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				
4.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				
5.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 이용				
<세탁물의 처리 기준>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 미처리				
6.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재위탁 금지(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7.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 후 세탁				
8. 의료기관은 세탁금지 세탁물(제5조)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 위탁 금지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의료기관만 해당)>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 설치				
마. 쥐나 해충 서식 방지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함)은 다른 시설과 구획(의원급 의료기관은 미적용)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함(의원급 의료기관은 미적용)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2. 시설 및 장비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해당)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함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미구비 가능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함).				
(6) 다림시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구비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함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닛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함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세탁물 처리업자만 해당)>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 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과는 구획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같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같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				
라.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리				
마.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 구비				
바. 쥐나 해충 서식 방지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p>사.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구역만 구획할 수 있음</p> <p>(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 (2) 준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p>				
<p>아.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p>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				
(2)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				
(3)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함				
(4)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 없음				
(5)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함).				
(6)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롤러기·프레스기 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재봉틀 등).				
<p>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p> <p>(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p>				
<p>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함</p>				
3.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함				
4. 탈의실 :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고,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함				
5.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6. 운반차량				
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積載庫)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어야 함. 다만, 1대의 차량으로 수집·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함				
나.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다.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				
<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세탁물 처리업자만 해당)>				
1.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별표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 포함))				
2.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대표자 또는 상호, 시설 및 장비(작업장 면적 증감, 중요 세탁기기 증감, 소독시설의 변경),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3.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휴업(1개월 이상)·재개업·폐업 신고				
<감염예방교육>				
1.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 교육 실시(인터넷 교육 등 포함)				
2. 감염예방교육 기록 및 유지 여부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및 대장의 작성·비치>				
1.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구비,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구비				
3. 위 처리대장 서류 보존 3년				

2019년 12월 일 /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보건소 확인자 : (인)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3.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함				

2019년 12월 일 /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보건소 확인자 : (인)